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0. 5 선고 2021가단521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 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F

변 론 종 결 2021. 8. 31.

판 결 선 고 2021. 10. 5.

주 문

1. 피고들과 G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20. 1. 6.자로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G에게,

가. 피고 D은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7. 2.자 접수 제28434호로 마친,

나. 피고 E은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7. 2.자 접수 제284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에 대하여 2021. 3. 16. 현재 양수금 344,083,418원 및 그 중 139,844,377원에 대하여 202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G의 모친 H은 2020. 1.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G, I, F, J, K, 피고들이 있다. 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2020. 7. 2.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의 단독소유로,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G에게 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위와 같이 G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7분의 1)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

다. 피고들은 망 H의 유언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05. 9. 2. 마쳐진 근저당권이 G의 L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G에게 상속될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들과 G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G에게, 피고 D은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E은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진희

별지